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번호	서식명	비고
1	세무대리인 위임장	
2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	
3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4	조기결정신청서	
5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6	국세·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9	이의신청서	
10	심사청구서	
11	심판청구서	
12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13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	
14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	
15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16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17	세무조사 참관 신청 취하서	

위 임 장 (2-2)

◦ 조사참여·의견진술 세무대리인 명단

순번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1					
2					
3					
4					
5					
6					
7					
8					
9					
10					

※ 상기 명단에 기재된 세무대리인 이외에는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습니다.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

1. 인적사항

- 소재지(주소) :
- 법인명(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 명) : ◦ 생년월일 : (당 세)

2. 요청사항

본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귀 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반환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적사항

관 계 : (주)000의 대표이사(명함 및 신분증 등 첨부)

성 명 : ①

생년월일 :

주 소 :

조사공무원 성명 : ①

소속 :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청(서)장 귀하

【붙임 3】

세무조사 (중지 · 연장)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사업장)			
신 청 내 용				
⑥ 조 사 대 상 세 목				
⑦ 조사대상 과세기간				
⑧ 당 초 조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신 청 기 간		·세무조사 중지 :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기간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신 청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및 같은 규정 37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1조 및 같은 규정 53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조사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붙임 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조기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통지번호			통지연월일	20 .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받은날	20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구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액	신청세액	비고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그 밖의 세목 (원천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위 통지 내용 중 조기결정 신청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6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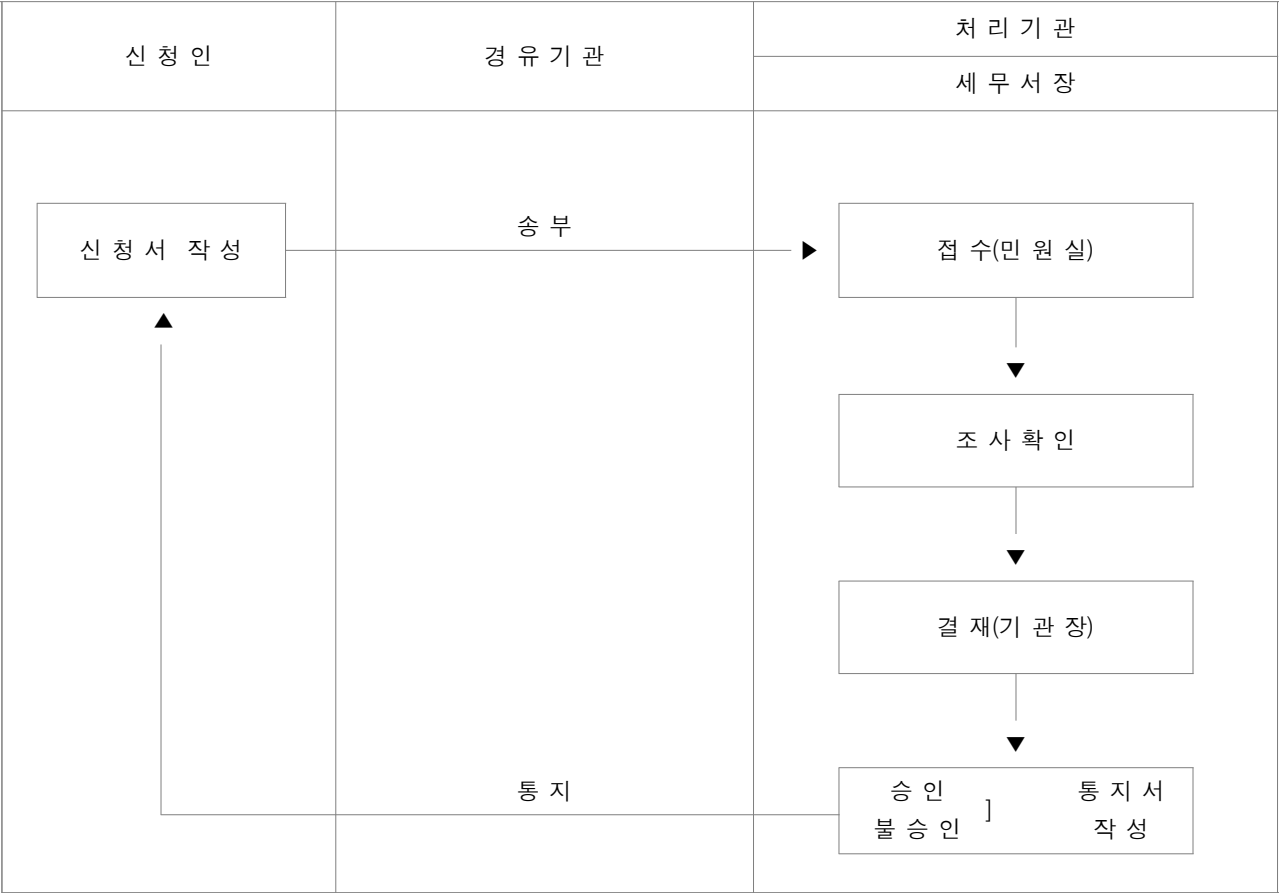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국세

[]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⑦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내용 구분							
[] 납부고지의 유예 [] 납부기한등의 연장 [] 압류·매각의 유예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		
⑧ 세목	⑨ 연도/기분	⑩ 납부기한 (독촉기한)	⑪ 본세	⑫ 가산금	⑬ 계	⑭ 본세	⑮ 가산금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⑯ 횟수	⑰ 세목	⑱ 연도/기분	⑲ 분납기한	⑳ 세액	㉑ 이자 상당 가산액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㉒ 체약상대국		㉓ 법인명(상호)				
	㉔ 특례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점·지점 관계 [] 기타(관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㉕ 직위		㉖ 성명				
㉗ 특례 신청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소재지(주소)(⑥):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및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
 - 납부할 세액이 고지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 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 전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과 구분하여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㉔, ㉕),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㉖, ㉗):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로 적습니다.

【붙임 7】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 임 장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사 업 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 행 자	구 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 배 우 자 등 []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 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 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붙임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과세전적부 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감사원법」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사항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 임 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사 업 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 행 자	구 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				
		배 우 자 등 []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 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 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우)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	--	---------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서명 또는 인)

귀하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의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의의신청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사 업 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구 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수행자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 배 우 자 등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음
------	---	-----------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접 수 자	
1. 불복이유서()		접수일자인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 청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붙임 1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처분청				조사기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배우자등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 청구)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붙임 1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3. 3. 20.>

조세심판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전송(Fax) :	
처분청				조사기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년도 기분 세 원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여부 : 여 [] 부 []							
[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관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조세심판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장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관세사 [] 배우자등 []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2부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2부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2부					수수료 없음

조 세 심 판 청 구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3. 증거목록()			접 수 자		
			접수일자인		

【붙임 12】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의3 서식] <개정 2023. 12. 22.>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_____연도 _____기분 _____세 _____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

구분	조사절차 준수 여부 설문	답변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진행·종결)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니 ‘예’, ‘아니오’로 답변하여 주시고, 불만·개선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 단계	① (사전통지 대상)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송달받았습니까? (사전통지 생략)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교부받았습니까?			
	② 조사공무원이 조사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까?			
	③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받고, 권리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④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⑤ 조사공무원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한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진행 단계	⑥ 조사공무원이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⑦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⑧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는 조사내용과 관련된 자료입니까?			
	⑨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내용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⑩ 조사공무원이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종결 단계	⑪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또는 조사중지를 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⑫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또는 조사중지를 신청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까?			
	⑬ 조사가 중지되었는데도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⑭ 조사대상 범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까?			
	⑮ 일시보관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반환받았습니까?			
불만· 개선 의견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

◇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투명성	1-1	귀하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1-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점)
	1-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해 조사결과와 후속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신뢰성	2-1	귀하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다.	(점)
	2-2	조사공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법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점)
	2-3	귀하는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다.	(점)
친절성	3-1	조사공무원은 강압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언행 없이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점)
	3-2	조사공무원은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점)
청렴성	4-1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현금, 상품권, 선물 등) 제공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점)
	4-2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향응(접대, 골프, 여행 등) 제공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	(점)
	4-3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적인 편의(식사, 숙박, 교통편 등) 제공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적이 없다.	(점)
	4-4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적인 만남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다.	(점)

개선 의견	5-1	세무조사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불공정성 ② 조사기간·범위 및 조사 절차 미준수 ③ 조사공무원의 강압적 행위 등 불친절 ④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⑤ 해당 없음 ⑥ 기타 개선의견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의견	5-2	조사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조사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 ② 세무대리인 등의 청렴 실천 의지 ③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감사 시스템 ④ 부패행위에 관대한 조직 문화 개선 ⑤ 해당 없음 ⑥ 기타 개선의견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서식] <개정 2023. 3. 20.>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납세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요청대상	세목				
	과세기간				
심의 요청 사항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외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 납세자의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세무서·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위 임 장	아래 사람에게 위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수 행 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						
		배 우 자 등 []				

[앞면]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납세 관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주소		전 화 번 호		
조사유형	조사대상 과세기간	신고 여부	수입금액	비 고	
참관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조력 범위 안내 : 참관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 범위는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상담 등을 포함하나 과세 쟁점에 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참관」 제도에 대한 안내

□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 세무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 절차 준수** 및 **조사권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

-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개인사업자** : 10억원 미만

② **법인사업자** : 20억원 미만(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 단,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 「세무조사 참관」 지원 내용은?

- 세무조사 참관 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즉시 **시정**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쟁점** 등과 관련한 **과세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상담은 조력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조사 과정의 납세자의 권리, 자료제출 방법, 조사기간 준수 등

□ 「세무조사 참관」 신청 방법은?

-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종결 7일 전까지** 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배제업종 등

구 분	업 종
소 비 성 서 비 스 업	· 호텔업 및 여관업(법인에 한정)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 통 과 정 문 란 업 종	· 금지금 제조·판매업 · 석유류 판매업
과 표 양 성 화 등 별 도 관 리 필 요 업 종	·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고 소 득 전 문 직 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의2 서식]

세무조사 참관 신청 취하서

납세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참관 신청일	
참관 신청 사유	
참관 취하 이유	

위와 같이 세무조사 참관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_____ 세무서장, ☐ _____ 지방국세청장 귀하

※ 세무서, 지방국세청 중에서 해당 관서 ☐안에 ☒하고 관서명을 기재 함